

# 동계올림픽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

의안 번호	2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4.  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영월군·평창군·정선군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규약의 구성(안 제3조)
  -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,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 - 위원은 각 지자체장, 생활권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
- 규약의 기능(안 제5조)
  -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
  -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 -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
- 규약의 운영(안 제6조)
  - 회장은 영월군수, 평창군수, 정선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운영
  -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직무 수행 불가 시 부군수가 대행
- 회의 개최 및 의결(안 제7조)
  - 정기회의 연 1회, 임시회의 수시 개최
  - 의안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## 3. 붙임자료

- 동계올림픽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1부.
- 협의회 구성 관련 근거 1부.

[붙임 1]

## 동계올림픽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평창군·영월군·정선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협의회의 명칭은 동계올림픽생활권행정협의회(이하 '협의회'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장, 생활권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사무소)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.

제5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결정한다.

1.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
2.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에 관한 사항
4. 지역행복생활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
5. 협의회의 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
6. 그 밖의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

제6조(운영) ① 협의회의 회장은 영월군수, 평창군수, 정선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한다.

②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사무를 총괄한다.

④ 협의회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전후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7조(회의)**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③ 위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의안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실무협의회)**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의 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.

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생활권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한다.

④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 안건의 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고,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자문위원)**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동수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해당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.

② 자문위원수는 자치단체별 10명 이내로 한다.

③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자치단체별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회의참석)** ① 협의 안건에 따라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협회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**제11조(간사와 서기)** ①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생활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생활권업무 담당자로 한다.

③ 협회회의 간사는 회의록 등 의결·활동 사항을 작성 관리한다.

**제12조(합의사항 처리)** 협회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경비부담)** ① 협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경비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협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한다.

**제14조(회계)** 제13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제2항에 의해 협회 경비를 분담할 경우에는 회계 상황을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5조(규약개정)** 협회의 규약 개정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다.

**제16조(보칙)**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약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## 협의회 구성 관련 근거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2조(행정협회의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### □ 「지역생활권 선도사업 실무편람」

#### ○ 지역생활권 협의체 설립

- 지역생활권 협의체는 생활권 참여 지자체 간 협의체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임

※ 협의체가 생활권의 컨트롤 타워로서 생활권 설정, 협력사업 발굴, 공동발전 목표와 비전 설정 등을 수행함